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정 2009. 10. 20 개정 2013. 03. 01
 개정 2014. 04. 01 개정 2014. 08. 01
 개정 2015. 08. 01 개정 2016. 02. 29
 개정 2016. 11. 08 개정 2018. 10. 2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계약기관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제3조 (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경동대학교 학칙 『별표1』에 의해 정한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08. 01, 개정 2018. 10. 29)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신설 2018. 10. 29)
2. 재교육형 계약학과: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 10. 29)

제5조 (계약학과 개설신청 및 입학시기) (개정 2014. 08. 01)

① 계약학과 개설 신청 및 입학 시기는 입학전형 일정과 협약대상 기관의 협약조건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개정2014. 08. 01)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직선거리가 5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0. 29)

③ 계약학과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등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개정 2016. 02. 29)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6. 재직 중 퇴직, 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02. 29)
 8.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02. 29)
 9.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신설 2016. 02. 29)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 ④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교육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산업체와의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9)
- ⑤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거나 계약 단체의 상부 기관이 동일한 다른 기관을 포함하여 대표 한 기관이 계약 및 설치할 수 있다.
- 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입 학

제6조 (입학자격)

-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편입학은 본교 편입 규정에 준하는 사람.
 2.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10. 29)
 3.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입학일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할 사람이어야 한다. 단,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2. 29, 개정 2018. 10. 29)
 4.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9)
- ②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정 2018. 10. 29)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개정 2018. 10. 29)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개정 2018. 10. 29)
 5.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 10. 29)
 6.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규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제7조 (학생의 선발)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학칙과 규정을 준용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제3장 교육과정

제8조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및 수업일수는 대학의 학칙과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졸업학점은 대학의 학칙과 규정을 따르되, 교과과정 편성과 교과 영역별 졸업최저이수 학점은 130학점으로 하며, 성적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교육과정을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 편성 할 수 있다.

제10조 (수업)

- ① 수업 시간과 방법은 주간, 야간, 계절,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 대학학칙이 정하는 방법을 토대로 하여 본교 또는 계약 산업체의 협의 따라 운영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 ③ 매학기 종료 후 산업체에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신설 2016. 02. 29)
- ④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9)
- ⑤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칙에서 정한 졸업학점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8. 10. 29)
- ⑥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에게 이동수업 승인 요청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 10. 29)
- ⑦ 이동수업의 승인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으며,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 10. 29)
- ⑧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광역행정권 혹은 직선거리 5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육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0. 29)
- ⑨ 이동수업장소의 시설설비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실험·실습장비·교육기자재 등이 필요한 수업의 경우 관련 시설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 10. 29)
- ⑩ 이동수업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신설 2018. 10. 29)

제11조 (교육과정 이수 인정)

-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근무경력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9)

제4장 계약학과 운영 관리 등

제12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16. 02. 29)

제13조 (운영위원회) (삭제 2014. 3. 10)

제14조 (계약학과의 운영) 계약학과의 운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 또는 유사한 학과(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15조 (계약학과의 폐지 등)

-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개정 2016. 02. 29)
- ②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 산업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퇴직, 면직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타 산업체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 ③ 계약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5조 제3항 제6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02. 29)
- ④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개정 2018. 10. 29)
- ⑤ 제3항에 따라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1/2 이상을 이수하고, 1/2미만 이수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 02. 29)
- ⑥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신설 2018. 10. 29)
- ⑦ 상기 제1항, 제4항, 제6항에 해당하는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9)

제16조 (교육비 부담)

- ① 계약학과의 학생에 대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계약학과 운영비)은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의 책정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4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업주단체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학과의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1, 2016. 11. 8)
- ④ 대학은 계약학과 재학생에게 산업체재학생생활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체재학생 생활비장학금은 장학규정 제13조의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제5장 운영위원회 (신설 2014. 3. 10)

제17조 (설치) (신설 2014. 3. 10)

-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과별로 학사학위과정을 관장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구성) (신설 2014. 3. 10) (개정 2015. 08. 01)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교무처장, 입학처장 및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9)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신한다. 그리고 교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신설 2016. 02. 29)

제19조 (임기) (신설 2014. 3. 10)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기능) (신설 2014. 3. 10) 위원회는 매학기 학과운영계획, 학생의 휴학, 입학취소 등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1조 (회의) (신설 2014. 3. 10)

-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준용규정

제22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규정, 중소기업계약학과 운영지침을 준용한다.(조개정 2014. 3. 10, 개정 2018. 10. 29)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입학자격은 2016년 9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